

[2019년 ‘제13회 세계한인의 날(10.5)’ 기념 유공 포상 계획 안내]

외교부는 2019년 「제13회 세계한인의 날」(10.5)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관련 기관·단체는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포상 대상 및 부문

-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
- 국민훈장, 국민포장, 표창
 - ※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

2. 포상 대상자 자격

- 각 훈격별 최소 공적기간 자격 기준
 - 훈장 15년 이상, 포장 10년 이상, 표창 5년 이상

구분	국민훈장					국민 포장	표창		
	무궁화	모란	동백	목련	석류		대통령	국무총리	외교부 장관
공적기간	15년 이상					10년 이상	5년 이상		

○ 재포상 금지 기간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, 포장은 5년 이내,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.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.
-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, 혹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,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

○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
- 2) 형사처분
 - 가)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 - 나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다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라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마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바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3)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가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나)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

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 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
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
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
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
8)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

3. 추천자

o 대한민국 국민 개인, 기관, 단체, 기업 등 제한 없음

※ 1인(단체)이 다수 후보자 추천도 가능하나,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기재하여야함.

4. 추천서류 접수

o 제출 서류

- 후보자 추천서(필수), 정부포상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필수), 공적 증빙서류(있을 시, 별도 양식 없음)

※ 외국국적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서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제출

o 접수방법

- 등기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

o 접수처

- 후보스텝 대한민국 총영사관

(주소) One Gateway Center 2F,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

o 접수기간

- 2019.5.15.(수)까지

5. 수상자 발표

- 2019.10월 중 (개별통보)

6. 기타

-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/끝/

끝.